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33 발의연월일: 2025. 4. 25.

발 의 자:문진석・이건태・강준현

윤종군 • 이재관 • 권향엽

손명수 · 이정문 · 이연희

복기왕 • 전용기 • 이춘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경우 현행법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, 허위서류를 제출해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바 있음.

해당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하였으나, 2심 법원은 근저당권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였음.

이에 부동산 등기가 실제 사실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피해를 입는 이해관계인이 해당 등기에 대한 경정신청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(안 제32조의2).

법률 제 호
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2(이해관계 있는 자의 경정등기 신청) 제23조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이를 신청할 수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2조의2(이해관계 있는 자의
	경정등기 신청) 제23조제5항
	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
	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경정의
	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
	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
	제3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.